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 [대안]

의안 번호	12337
----------	-------

제안연월일 : 2011. 6. 23.

제안자 :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사할린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일제에 의해 자유의사에 반하여 타국에 끌려가 종전 후 사할린에 방치되었다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도 비인도적인 사할린 강제이주 및 강제노동에 대한 사과와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일본인에 의한 사할린 한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할린 동포에 대한 일제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입증하고 이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러시아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관련 자료 및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강제징용된 사

할린 동포들로부터 전쟁자금 마련을 위해 강제로 모금한 우편저금 계좌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과거 10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과거사 정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사할린 동포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의 문제인바,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수호를 위해 과거 일본에 의해 자행된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진상규명 및 전후 피해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의 비인도적인 사할린 강제징용을 규탄하고, 동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바 없음을 재확인 하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1945년 8월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가미시스카와 미즈호 한인 학살사건이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이하 ‘제노사이드 협약’이라 약칭함)’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관련자 처벌 및 피해배상을 위한 UN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사할린 동포에 대한 일제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현재 러시아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전쟁자금 마련을 위하여 일제가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들의 입금을 갑종적립금, 을종적립금, 우편저금 등을 통하여 강제로 모금하여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며, 피해 전모를 밝히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5. 사할린 한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한국과 일본간의 중요한 과거사 청산문제임과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바, UN인권이사회가 이 문제의 조사 및 피해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경위

가. 2010년 7월 30일 박선영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일본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 2010년 7월 30일 박선영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제2차세계대전 직후 사할린에서 일본인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한인) 학살 진상조사 및 전후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2010년 9월 1일 박선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기록 제공 촉구 결의안”, 이 3건의 결의안을 각각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 11. 2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7)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에서 위 3건의 결의안을 심사한 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13)에서 3건의 결의안에 대해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일제는 태평양전쟁 당시인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한반도의 수많은 청년들을 강제 또는 반강제로 사할린으로 이주시켰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사할린에서 일본인만 귀환조치 하였을 뿐 한인들은 일본국적 상실이라는 구실로 사할린에 방치하였음.

또한, 종전 직후 가미시스카(레오니도보) 한인 학살사건, 미즈호(포자르스코예) 한인 학살사건 등 일본인에 의한 사할린 한인에 대한 조직적인 집단학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하여 현재 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

이러한 집단학살은 명백히 제노사이드(Genocide) 협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 정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및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UN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한편, 사할린 동포에 대한 일제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러시아 정부는 당시 일제가 직접 작성한 화태청의 자료, 소련정부가 조사한 개인신상자료 및 사망 기록문서 등 상당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

그러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 받을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일제는 전쟁자금 마련을 위하여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들의 입

금을 갑종적립금, 일종적립금, 거치저금, 우편자금, 애국저금 및 각종 채권을 통하여 강제로 모금하고 현재까지도 상환하지 않고 있는바,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피해 전모를 밝히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사할린 한인 문제는 한국과 일본간의 중요한 과거사 청산문제인 동시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문제인바,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수호를 위해 과거 일본에 의해 자행된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진상규명 및 전후 피해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함.